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9. 2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9. 11
- 나.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 다. 회부일자 : 1996. 9. 12
- 라. 상정 및 의결
 - 제4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1996. 9. 19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1996. 9. 19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 가. 제안사유
 - 최근의 일련의 대형사고들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라기 보다 인력부족에 따른 관리부실로 일어난 인위재난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가스안전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 나.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0조(대통령령)

2) 市정원승인(市기획 12200-578, 96. 7. 31)

다. 주요골자

- 1) 재난관리계 정원 1명에서 전기직 8급 2명보강.
- 2) 가스안전계 정원 2명에서 화공직 8급 2명보강.
- 3) 구본청정원 419명에서 423명으로 조정

※

관 리 기 관 별	현 행	증 감	조 정
계	870명	4	874
구 본 청	419	4	423
의 회 사 무 국	21	.	21
보 건 소	95	.	95
동	335	.	335

3.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 재난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현실정에서 지역단위 재난상황의 종합 관리 및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계 기술직(전기직)인력을 보강함과
- 가스 사용의 대중화와 빈번한 대형가스사고 발생,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안전관리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계 기술직(화공직)인력 보강 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질의요지	답변요지
<p>○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경제진흥과에 각각 2명의 인력을 증원하게 되는바 증원될 인력을 보면 전기와 가스 그리고 소방업무 점점으로 사료되는 바 전기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소방은 소방서에서,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업무의 이원화로 혼란만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p>	<p>○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총괄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에는 부분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으나 점검 이후에도 사용자의 부주의와 부분점검에 따른 미비점으로 여전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회 인력이 증원될 경우 사고발생율이 높은 다중집합장소인 시장과 교량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p>
<p>○ 향후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시 증원될 인력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업무추진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지 여부?</p>	<p>○ 금회 증원되는 인력은 새로 직제설치를 위하여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불과하며, 향후 인력증원 요구시에는 보강되는 인력에 대한 업무내용도 제출하겠습니다.</p>

5. 토론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